

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2월 16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2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2월 24일

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구미 출신 한말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을 재조명하고 기념하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
- 왕산 허위 선생 후손의 기념공원 부지 기부채납을 수용하여 기념공원을 조성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○ 기부채납 재산

(왕산 허위선생 기념공원 부지)

• 기부물건 : 대지 3필지 1,990m²(601평)

구미시 임은동 266번지 1,462m²

구미시 임은동 266-1번지 474m²

구미시 임은동 262-2번지 54m²

• 추정가격 : 373,364천 원(공시지가 기준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제77조,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및 제4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택 환

-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부지 기부채납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임.
- 따라서, 왕산 허위선생 기념공원 조성 부지로 대지 3필지를 기부채납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